

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

1.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

□ 우선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

대학에 배정된 교부금(장학금)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,
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 선별(우선지원 또는 지원제외)하여 지원한다.

비(非)기숙사생 > 기숙사생 >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다자녀순 > 다문화
가정 > 학년 낮은 순 > 연소자 순(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)

□ 지원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

지원제외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따르며,
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가.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의거 <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
원거리 인정기준>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등(국토교통부 청년 주거
급여 분리지급,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및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사업 등 각종
주거지원 사업)을 지원받는 자
- 다. 해당 학기에 지정한 기한 내 서약서에 서약하지 아니한 자
- 라. 월별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 월 장학금
- 마. 제출한 증빙서류의 부적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을 요청한 경우, 지정한 기한 내
소명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 월 장학금
- 바. 3월, 9월 중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졸업, 제적 등)이 된 자
- 사.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신청 취소자, 중도 취소자, 환불자
- 아. 기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

2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
□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

가.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직전 월의 지급요청서 및 학적 상태 등을 검토 후 다음 달 말일 전으로 학생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.

※ 단, 매 학기 20만원 정액 지원하는 3월, 9월은 재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해당 월의 지급요청(지급요청서 작성 등)이 필요 없기에 서약서 작성 여부 및 학적 상태만 확인 후 지급한다.

나. 계절학기 수강생의 경우, 2개월 분(7월~8월, 1월~2월)을 일괄 지급한다.

다. 증빙서류 제출 지연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